

2021년도 제1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19.(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7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184건(안건번호 제2021-83493호~8504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83493호는 불법복제물을 스트리밍 내지 다운로드 형식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바,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83494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유튜브 이용약관에 따라 권리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영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83495호는 최신 방송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송 중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83500호~83503호는 심의대상 자막 파일의 이용은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점,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시정권고 판단의 적극적 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177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87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7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5쪽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10쪽 긴급 대응 저작물명과 저작물 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 및 제2호 안전 비공개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제2호 안전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은 원안대로 공개하고 제2호 안전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

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18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83493호~85049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83493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음악저작물 공유 사이트 이용자가 국내 음원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및 mp3 다운로드 형태로 전송 중인 사안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사이트는 BGM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음악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것으로, 초기에는 이용자들이 자작곡을 공유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 사이트 개편 이후 운영자가 잠적하면서 현재는 불법으로 복제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됨.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8349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사이트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왜 폐쇄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임.
- B 위원: 사이트 운영 시에 이익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사이트 중앙, 하단 부분에 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불법 사이트에 광고 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사이트 자체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님. 덧붙여, 불법 사이트의 경우에도 광고 게재 자체는 가능함.
- C 위원: 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수익만 취하는 상황으로 보임. 운영자는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공식적인 연락망 역시 사이트 내 주소로 되어 있어 운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 A 위원: 이 정도 사안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8349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원본 영상물은 삭제된 것은 아니고,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인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유튜브 영상물은 이용자 전체에게 공개, 일부에게만 공개하는 등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부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유튜브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전송 중인 것으로, 합법적인 이용임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 D 위원: 타인의 유튜브 영상물이지만 관리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으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으로 보임.
- A 위원: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1-83494호는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호 제2021-83495호는 블로그에서 ♠♠♠♠♠♠♠♠♠♠의 방송 '♡♡♡♡♡♡♡♡'의 2021. 7. 9. 방영분을 전송 중인 사안임.

해당 영상저작물은 ♠♠♠♠♠♠♠♠♠♠에서 생방송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에서 한국어로 독점 생중계하고 있음. 해당 방송 채널은 케이블 계약에 따라 유료로 제공됨.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8349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D 위원: 유료로 제공되는 최신 방송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송 중에 있으므로 가결하자는 의견임.
- A 위원, B 위원, C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1-83495호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83500호~83503호는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 ♠♠♠♠♠♠♠♠♠♠ 등의 자막 파일(smi 또는 ass)을 영상물 없이 게시한 사안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영상물 없이 자막 파일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

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먼저 심의대상 자막 파일은 smi 또는 ass 파일로 제공 중이어서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전제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침해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을 비롯하여 해당 블로그의 다수 게시물에서 광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배너가 확인되며, 심의대상 자막 파일을 포함하여 다수의 자막 파일을 제공 중임.

또한 심의대상 자막 파일은 2차적저작물임은 분명하나 게시자가 직접 제작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일부 저작물은 합법 시장에서 우리말 자막과 함께 유통되고 있으며, 각 애니메이션은 2021년 상반기에 방영 중인 작품으로, 저작권자가 권리행사 없이 장기간 방치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최신 저작물로서 시급하게 보호하여야 할 저작물인 것으로 판단됨.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83500호~8350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영상물 없이 자막 파일만 제공하는 사안에 대해 기존에도 많은 심의를 해왔음. 요약하자면 마니아층의 취미 공유로서의 자막 전송인 경우 부결해 왔고,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 중인 경우 가결해 왔음. 해당 안전의 경우 후자에 가깝다고 판단됨.

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3494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83493호, 제2021-83495호~8504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1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26.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